

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3년 8월 11일

○ 회부일자 : 2003년 8월 12일

3. 제안이유

○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개정(2003.5.29, 법률 제6902호) 시행됨에 따라 증평출장소가 증평군으로 승격되어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함

4. 주요골자

○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 폐지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충청북도증평출장소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

증평 주민들의 염원이던 증평군설치에 관한 법률(법률 제06902호)이 2003. 5. 29일 제정 공포되어 2003. 8. 30일부터 증평군이 출범함에 따라,

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와 증평출장소에서 제정한 증평출장소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,

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.

**붙임 :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**